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. 10. 1.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“통계청장”이 “국가데이터처장”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가보훈부령 제 호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항제1호 중 “통계청장”을 “국가데이터처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수익사업의 승인 기준) ① ~ ③ (생 략)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업종 또는 품목의 중복 여부 판단 기 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. 1. 업종의 중복 여부: 「통계 법」 제22조에 따라 <u>통계청장</u> 이 작성 ·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세세분류 2. (생 략)	제10조(수익사업의 승인 기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. 1. ----- ----- <u>국가데이</u> <u>터처장</u>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